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원서

※ 하단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장 및 직위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보류사유		보류기간 . . . ~ . .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를 신청합니다.

이
의
의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의무자와의 관계(의)

병무청장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 사실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사유가 해소(면직·퇴직·제적·귀국 등)되었을 때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그 해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된 일시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병역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를 받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른 소집에 응하여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소집에 응한 사람은 「병역법」 제90조제2항제2호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작성 방법

1. 신청인은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를 희망하는 의무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보류사유는 대상 직종 또는 질병 등 보류사유를 적습니다(보류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3. 보류기간은 입원, 출국 등의 예정일부터 퇴원, 귀국 등의 예정일을 적습니다.